

윤리경영실천규칙

목 차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	나-A2-14-1
제 2 조 (용어정의)	나-A2-14-1
제 3 조 (적용범위)	나-A2-14-1
제 4 조 (주관부서)	나-A2-14-1

제 2 장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 수수 및 공여 금지

제 5 조 (금품수수)	나-A2-14-1
제 6 조 (향응접대)	나-A2-14-2
제 7 조 (편의)	나-A2-14-2
제 8 조 (기타 경제적 이익)	나-A2-14-2
제 9 조 (가족의 행위)	나-A2-14-2

제 3 장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

제 10 조 (성희롱)	나-A2-14-2
제 11 조 (직장 내 괴롭힘)	나-A2-14-2
제 12 조 (구성원간 경제적 이익 공유)	나-A2-14-2

제 4 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금지

제 13 조 (회사 정보의 사적 사용)-----	나-A2-14-2
제 14 조 (협력회사에 대한 투자) -----	나-A2-14-2
제 15 조 (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, 공동 재산 취득) -----	나-A2-14-3
제 16 조 (구성원 본인 및 구성원의 가족과 회사와의 거래) -----	나-A2-14-3
제 17 조 (겸업·겸직)-----	나-A2-14-3

제 5 장 회사 자산 및 정보의 사적 사용 금지

제 18 조 (회사 자산의 횡령 및 유출) -----	나-A2-14-3
제 19 조 (회사 정보의 유출) -----	나-A2-14-3
제 20 조 (회사비용의 낭비 및 사적사용)-----	나-A2-14-3

제 6 장 구성원의 성실의무 원칙 위반 행위 금지

제 21 조 (부정청탁) -----	나-A2-14-3
제 22 조 (불합리한 업무수행)-----	나-A2-14-4
제 23 조 (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윤리행위)-----	나-A2-14-4
제 24 조 (건전한 근무분위기 형성)-----	나-A2-14-4

제 7 장 윤리경영 실천 규칙의 운영

제 25 조 (구성원의 책임 및 의무)-----	나-A2-14-4
제 26 조 (윤리경영 실천 가이드 운영)-----	나-A2-14-4
제 27 조 (징계) -----	나-A2-14-4

부칙

윤리경영실천규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본 윤리경영 실천규칙은 SK 에코플랜트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여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정의) ① 금품 : 현금, 유가증권, 선물, 특별할인 혜택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.

② 향응·접대 : 식사, 음주, 레저활동 등의 수혜를 말한다.

③ 편의 : 시설, 교통편, 숙박, 관광, 행사, 견학 및 시찰 등에 대해 금품 및 향응·접대 이외의 제공이나 지원을 말한다.

④ 이해관계자 :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, 법인, 기타 단체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를 말한다.

⑤ 가족 :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⑥ 외국공무원 등 : 외국정부의 입법, 행정 또는 사법업무 종사자(국회의원 포함), 국제기구직원,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외국의 공적업무 수행자를 말한다.

⑦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경우 : 금품 등을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수성을 갖고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뇌물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 본 실천지침은 SK 에코플랜트(이하 “회사”)의 국내외 법인 및 지사, 자회사 및 회사의 모든 이사, 임원 및 직원(이하 “구성원”)에게 적용된다.

제 4 조 (주관부서) 본 규칙의 주관부서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으로 한다.

제 2 장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 수수 및 공여 금지

제 5 조 (금품수수)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

수수하거나 공여하지 아니한다. 단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홍보 및 행사기념품, 질병·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성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모금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.

제 6 조 (향응접대)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향응·접대를 수수하거나 공여하지 아니한다.

제 7 조 (편의) 업무관련 여부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수수하거나 공여하지 아니한다.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 또는 음식물은 예외로 한다.

제 8 조 (기타 경제적 이익) 이해관계자에게 채무 변제 및 보증, 금전 소비대차계약, 부동산·동산에 대한 임대차·매매계약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가족의 행위) 구성원의 가족이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도 구성원의 행위로 간주한다.

제 3 장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금지

제 10 조 (성희롱) 구성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 또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직장 내 괴롭힘) 구성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. 또한, 구성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.

제 12 조 (구성원간 경제적 이익 공유) 구성원간 금전대차, 대가성으로 수수한 금품 등의 공유를 하지 아니한다.

제 4 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금지

제 13 조 (회사 정보의 사적사용)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제 14 조 (협력회사에 대한 투자)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협

력회사의 주식, 채권 등에 투자를 하지 아니한다. 단, 협력회사가 상장·등록법인으로 장내 매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15 조 (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, 공동 재산 취득)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을 투자,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16 조 (구성원 본인 및 구성원의 가족과 회사와의 거래) 구성원 및 구성원의 가족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17 조 (겸업·겸직)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에 이중 취업하거나 다른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.

제 5 장 회사 자산 및 정보의 사적 사용 금지

제 18 조 (회사 자산의 횡령 및 유출) 회사 자산(유형자산 및 지식재산권·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을 포함한다)의 손실을 초래하는 횡령, 기물·정보 유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회사자산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.

제 19 조 (회사 정보의 유출) 회사의 영업정보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20 조 (회사 비용의 낭비 및 사적사용) 회사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회사 비용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
제 6 장 구성원의 성실의무 원칙 위반 행위 금지

제 21 조 (부정청탁) 구성원은 본인 및 제 3 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.

- ① 채용, 승진, 이동, 급여, 복리후생, 교육, 인사평가 등 인사에 관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입찰, 협력업체의 선정, 계약내용의 결정 등에 관여하는 행위+

③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청탁을 하거나 알선, 지시하는 일체의 행위

제 22 조 (불합리한 업무수행) 구성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불합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제 23 조 (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윤리행위)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제 24 조 (건전한 근무분위기 형성) 구성원은 공과 사를 구분하여 건전한 근무분위기를 형성, 유지해야 한다.

제 7 장 윤리경영 실천규칙의 운영

제 25 조 (구성원의 책임 및 의무) ① 구성원은 규정 및 제반 법규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직책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.

③ 구성원은 윤리경영 실천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발견 즉시 윤리경영 담당 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구성원은 윤리경영담당 조직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조사 시 관련 정보제출 및 소명요구에 적극 협조한다.

제 26 조 (윤리경영 실천 가이드 운영) ①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구성원들의 윤리적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‘윤리경영 실천 가이드’를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다.

제 27 조 (징계) 회사는 구성원이 윤리규정, 윤리경영 실천규칙,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으며,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칙은 202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칙은 2022 년 9 월 2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